

공제사업 출자금예치 업무안내

우리 협회는 전력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출자금예치 등 회원의 공제사업 출자와 관련된 업무를 안내합니다.

1. 출자대상자

: 정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(직무회원, 일반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)

2. 출 자

- 의무출자: 직무회원은 공제사업에 1구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(정관 제8조제2항). 다만, 설계업 및 감리업에 등록하는 회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함.
- 임의출자: 일반회원·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음.

※ 직무회원의 범위

-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·감리업자와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
-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
-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3. 출자금액

: 100,000원(1구좌당 금액) 이상. 다만, 업등록 회원의 출자금은 아래와 같음.

구 분		좌수	금액(원)	비 고	
설계업	총 합	200	20,000,000	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"별표 4" 참조	
	전 문	1종	70		7,000,000
		2종	20		2,000,000
감리업	총 합	200	20,000,000	동 "별표 5" 참조	
	전 문	100	10,000,000		

4. 예치금 수납기간: 1996. 12. 23(일)부터 계속

5. 예치 취급처

: 당 협회 본부 및 지부(단, 업등록 회원의 출자는 본부에서만 취급)

6. 예치방법: 협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직접 입금.

- 본 부: 상업은행 No. 846-04-100362 대한전기기사협회
- 지 부: 직접 수납

7. 출자예치금 증명원 발급: 당 협회 공제과

8. 출자증권 발행 교부시기

: 자본금(출자금) 등기 익일 이후

9. 제출서류(업등록자에 한함)

- 출자금예치 신청서(협회 소정양식) 1부
- 인감증명서 2부
- 법인등기부등본 2부, 정관 2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

10. 예치금에 대한 처리

: 예치금은 협회규정에 의거 처리함. 다만, 업등록자의 예치금은 예치증명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업등록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체 환불 또는 양도할 수 없음.

11. 예치업체에 대한 업무거 래시기

: 자본금 등기 익일 이후

1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협회 공제과(TEL : 561-1571) 및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감리원 교육훈련 · 보수교육 안내

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리원 교육훈련과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.

감리원교육훈련

- 교육장소: 추 후 선정 통보(접수시 안내)
- 교육대상
 -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 소속된 감리원
 -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공사 감리대상기관의 감리원
 - 향후 감리업을 등록하는 자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전력기술인
 - 기타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전력기술인
 -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전기분야 감리원
- 교육일시
 - 1차 교육
 - 중·고·특급감리원: '97. 2. 3~5(2박3일)
 - 초급감리원: '97. 3. 17~21(4박 5일)
 - 2차 교육
 - '97.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오나 접수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교육훈련비(숙식비 포함)
 - 중급·고급·특급감리원: 180,000원
 - 초급감리원: 300,000원
- 교육접수
 - 접수기간: '97. 1. 15(수)~1. 25(토)까지
 - 감리원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육훈련비와 함께 협회본부 교육과에 접수(우편접수

도 가능하며 우편접수시 신청서와 우체국 소액환 동봉)

보수교육

- 교육일시
 - '97. 2. 17부터 3차 예정(접수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교육접수
 - 접수기간: '97. 2. 3(월)~2. 13(목)까지
 - 보수교육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육비와 함께 협회본부 교육과에 접수(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시 신청서와 우체국 소액환 동봉)
- 교육비: 25,000원
- ※ 교육접수시 유의사항
 - 감리원의 자격기준(초급, 중급·고급·특급감리원)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함
 -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'96. 10. 28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함.
 - 교육접수는 선착순으로 하며 계획된 인원 이상은 다음 교육차로 접수함.
 - 교육훈련비 및 보수교육비는 환불하지 아니함.
- 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 본부 교육과(TEL: 02-561-3494)로 문의하시기 바람.
- ※ 첨부: 감리원 교육훈련 신청서

[별첨에 1]

(초 급
 중급이상) 감리원 교육훈련 신청서

접수번호		교육기간		199 년 월 일 ~ 월 일(일)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
	자택주소			전화번호	
	수첩종류	경력수첩·감리원수첩	수첩번호	(경·감)	
	등급		수첩발급일	199 . . .	
근무처	회원		회원번호		
	직장명		대표자명		
	주소		전화번호		
	담당업무		현재		
교육비	현금·소액환		접수자확인	①	

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신청합니다.

199 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귀하